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20-22차 대한민국 심의 시민사회 사무국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국제부  
발 신 :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20-22차 대한민국 심의 시민사회 사무국  
담당: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지림 변호사 02-3675-7740 / [jirimkim@kpil.org](mailto:jirimkim@kpil.org)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림세영 간사 070-5176-8299 / [hanlim@minbyun.or.kr](mailto:hanlim@minbyun.or.kr)  
제 목 : [보도자료] 인종차별철폐 의무를 저버린 국가인권위원회 파행 규탄 기자회견 및  
인권위원들에 대한 시민사회 서한 전달 / 2025. 3. 21.(금) 9:30, 국가인권위원회 앞  
전송일자 : 2025. 3. 21.(금)  
전송매수 : 총 12매

**기자회견**

**인종차별철폐의무 저버린  
국가인권위원회 파행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3월 21일 (금) 오전 9:3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순서
  - 인종차별철폐 협약의 의미와 시민사회 역할
  - 인권위 파행 경과와 규탄
  - 한국 인종차별 실태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 한국 인종차별 실태 (난민, 이주아동)
  - 성명문 낭독

주최 -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20-22차 대한민국 심의 시민사회 사무국

인종차별철폐 의무를 저버린 국가인권위원회 파행 규탄  
기자회견 및 인권위원들에 대한 시민사회 서한 전달

**일시&장소: 2025년 3월 21일(금) 오전 9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앞**

1. 취지와 목적

- 오는 2025년 4월 29일부터 30일, 대한민국은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CERD)의 가입국으로서 제도적·실질적 인종차별 실태 및 협약 이행 여부에 대한 20-22차 정기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고서와 시민사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독립보고서를 바탕으로, 협약 이행 실태 및 개선 사항에 대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평가와 권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인권위는 지난 2025년 2월 24일, 3월 4일, 7일, 17일 총 4차례의 전원위원회를 통해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6차 심의 전 대한민국의 인종차별 실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독립보고서 제출을 두고 논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강정혜, 김용원, 한석훈 등 일부 인권위원들은 독립보고서의 상당 부분을 수정·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인권위는 이를 반영해 독립보고서의 원안을 각 주요 주제별로 검열하며 주요 권고 내용을 전면 삭제·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인권위의 기존 입장을 담은 원안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국가 주도의 인종차별 철폐 법제화 권고, 난민신청자 및 인도적 체류자 보호 조치,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등 핵심 내용이 삭제·축소되었으며, 최종 독립보고서는 인권위가 그동안 수차례 해온 권고와 의견표명에 상반되고 정부의 국가보고서보다도 퇴행된 내용으로 제출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 또한, 지난 전원위원회에서 일부 인권위원들은 '대한민국에는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인종이 존재하지 않는다,' '내국인의 권리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인종차별금지 법제는 국민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국내 문제는 국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등 국제인권 메커니즘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는 망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인종차별적 집회에서 흔히 등장하는 논리와 다를 바 없으며, 인권위가 독립적인 인권 보호 기구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 이에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20-22차 대한민국 심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시민사회 사무국(총 10개 전국이주인권단체)에서는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를 위한 인권위 독립보고서 의결의 건이 5회 재상정되는 제7차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3월 21일\(금\) 오전 9시 30분, 인권위 앞에서](#)

“인종차별철폐 의무를 저버린 국가인권위원회 파행을 규탄한다”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인권위원들에 대한 시민사회 서한을 낭독 및 전달했습니다. 참여 시민사회 단체들은 대한민국 인종차별의 실태를 은폐하고 인종차별철폐 법제화를 저지하는 인권위의 반인권적 작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전원위원회 논의에 있어 인권위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2. 개요

- **제목:** 인종차별철폐의무 저버린 국가인권위원회 파행 규탄 기자회견 및 인권위원들에 대한 시민사회 서한 전달
- **일시&장소:** 2025년 3월 21일(금) 오전 9시 30분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20-22차 대한민국 심의 시민사회 사무국
- **프로그램:**

\*사회: 김지림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발언1:**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과 시민사회보고서 제출 / 이완 공동대표 (아시아인권문화연대)
- **발언2:** 인권위 파행 경과와 규탄 / 한림세영 활동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언3:** 한국 인종차별 실태 -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 허오영숙 대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발언4:** 한국 인종차별 실태 - 난민, 이주아동 / 김사강 연구위원 (이주와인권연구소)
- **성명문/인권위원들에 대한 시민사회 서한 낭독 및 전달**

##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2025년 3월 19일(수)**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20-22**차 대한민국 심의 시민사회 사무국

## **\*\*[별첨] 발언문 및 성명문/인권위원들에 대한 시민사회 서한**

### **\*\*[별첨] 발언문**

발언**1**: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과 시민사회보고서 제출  
/ 이완 공동대표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은, 1965년 12월 21일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1969년 1월 4일에 발효되었습니다. 한국은 1978년 가입하였고, 현재 전세계 182개국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협약에 가입했다는 것은 인종차별철폐를 위해 국제적으로 공식적인 약속을 했다는 것이며, 협약 이행에 대한 법적 의무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협약에 의하면, 체약국은 인종차별을 규탄하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와 인종간의 이해증진 정책을 적절한 방법으로 지체없이 추구할 책임을 지며, 이 목적을 위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협약가입국은 유엔의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협약의 이행 여부를 심사를 받고, 이에따른 권고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국 또한 협약가입국으로써 정기적인 심사를 받고 있으며, 2025년 4월 29일~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 20~22차 대한민국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각 정부가 인종차별철폐 약속을 얼마나 성실하게 지키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 보고서 이외에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보고서 그리고 시민사회 보고서를 별도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협약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보고서 제출을 위해 전원위원회를 수차례 열어 논의하고 있으나, 국가인권기구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반하며 비상식적이고 전문성마저 매우 의심되는 내용으로 독립보고서가 논의되고 있어, 오늘의 인권위 규탄 기자회견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모인 한국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인종차별협약 이행상황과 한국사회의 인종차별에 대해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유엔에 시민사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기자회견 이후 10시부터 현재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상황에 대해 정리한 시민사회보고서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이 보고서는 3월 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공식 제출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시민사회단체는 시민사회대표단을 4월에 있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심의에 파견하여 한국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달하지 못하는 한국의 인종차별상황에 대해 유엔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대로 된 권고가 나올 수 있도록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활동에 관심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발언2: 인권위 파행 경과와 규탄  
/ 한림세영 활동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4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심의를 앞두고 제출할 독립보고서를 심의하면서, 기존 입장을 담은 원안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등 핵심 권고 사항을 전면 삭제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조건으로 가까스로 보고서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같은 해 6월, 인권위가 유엔 고문방지협약(CAT) 심의를 앞두고 제출한 독립보고서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사실상 인권위는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정부의 입맛에 맞춘 '누더기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 인권위는 다가오는 2025년 4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심의회에 앞서 제출할 독립보고서를 무려 4차례나 심의했지만, 또 다시 독립보고서의 모든 주요 내용을 조각조각 검열하며 인권위가 그동안 스스로 수 차례 권고해온 입장과 국제인권규범에 반하는 내용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전원위원회 회의에서는 일부 인권위원들이 국제인권 메커니즘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며,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일련의 전원위 심의 과정을 방청하며 이들의 참담한 인권 인식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심의 중 김용원 위원은 '대한민국에는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인종'이 존재하지 않기에 인종차별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정혜 위원도 '인종차별은 백인, 흑인, 아시아인 등 인종으로 분류되는 개념인데, 왜 난민 이슈 등 포함되지 않는 영역을 함께 고려해서 해석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두 위원은 지속해서 협약 제1부 1조를 거론하며 인종차별철폐 협약이 시민권 및 국적과 관련된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1993년 '비시민에 관한 일반권고 11호' 및 2005년 '비시민에 대한 차별에 관한 일반권고 30호'를 통해, 협약이 외국인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세계인권선언,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에 명시된 차별금지원칙과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훼손할 수 없다는 국제적 합의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 위원은 협약의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국제인권법리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독립보고서의 내용은 더욱 약화되고 있습니다.

한석훈 위원 역시 기존 권고와 법리에 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권에 대해 '난민 가족이 위험하면 다른 나라로 가면 된다'고 하였으며, 젠더기반 차별 이슈에 대해 '여성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처우는 노동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를 두는 것이지, 차별이 아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여성, 이주노동자, 난민 문제에 대한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에서 지적한 인신매매 처벌에서의 공백이 없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인권위는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역할을 상실하고, 국제인권기준과 메커니즘에 대한 무지와 반인권적 선동이 난무하는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독립적 인권기구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채,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을 무시하고 퇴행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인권위원들의 협약에 대한 몰이해와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 인권위는 기존 여성차별철폐협약과 고문방지협약, 그리고 이번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에도 이미 핵심 내용을 가지치기한 왜곡된 독립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파리원칙을 비롯한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가인권기구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자, 대한민국의 인권 후퇴를 인권위 스스로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현재 인권위 내부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인권위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반인권적 행태를 지속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인권위가 정부나 혐오 세력의 입장을 반영하는 도구로 전락한다면, 대한민국의 인권은 심각한 퇴보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권위는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독립성을 회복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야 합니다.

인권을 수호해야 할 기관이 스스로 반인권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일입니다. 우리는 인권위가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앞으로도 인권위의 퇴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인권위원들의 자격 문제를 엄중히 제기해 나갈 것입니다.

발언3: 한국 인종차별 실태 -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 허오영숙 대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철폐협약 정기 심의에 대한 국가인권위 독립보고서를 둘러싸고도 민주주의 위기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권위 일부 위원들의 반인권적인 발언들을 접하며 현실을 부정하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을 봅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는 자신이 일하고 싶은 사업장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사업장 변경 제한을 폐지하라는 지난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지역안에서만 사업장을 변경하도록 오히려 제한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주여성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성폭력을 경험하더라도 신고 등을 통해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하여야만 사업장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율이 낮은 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에서 여전히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같은 가설건축물이 기숙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비닐하우스를 기숙사로 제공받아도 이주노동자들은 기숙사비를 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실질 임금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특히 돌봄분야에서 강력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필수적인 돌봄노동을 이주여성에게 전가하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박탈하고 최저임금도조차도 주지 않으려 합니다.

계절근로자, 조선업 기능인력, 선원 등의 이주노동자들은 브로커의 개입으로 과도한 송출비용, 신분증 압류, 임금착취 등 인권침해와 노동착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가 많았던 기존의 예술흥행(E6-2) 비자 외에도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입국한 여성들로 성착취 인신매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절근로자나 선원 등 한국인 노동자 확보가 어려운 산업에서 인신매매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환경은 열악해져 가고 있는데,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공공영역에서 이주노동자 권리 구제를 축소시켰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은 한국인 배우자와 그 가족에게 종속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국인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체류가 불안해집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이혼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입증해야만 체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게 아니라면 한국 국적자의 어머니로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만 결혼이민(F6-2) 비자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또다시 체류에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한국사회의 자원과 네트워크에 취약한 이주여성이 세세한 체류 조건을 모두 갖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국남성 가족의 재산산과 돌봄을 해야 한다는 전제로 체류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에게 '정상가족 유지'를 제도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인종차별의 현실을 적확하게 국제사회에 보고해야 할 책무가 국가인권위에 있습니다. 그것이 정권과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인권위를 독립적인 인권보호기구로 만든 이유입니다. 인권위는 인종차별 실태를 은폐하지 말고, 자신의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발언4: 한국 인종차별 실태 - 난민, 이주아동  
/ 김사강 연구위원 (이주와 인권연구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4일 개최한 임시 전원위에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보고서 내용 중 난민,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인종차별과 아동을 포함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전원위를 방청하면서 저희 시민사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인종차별의 개념에 대해 무지한지, 인권 의식이 결여되어있는지, 그리고 인권위의 역할과 인권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독립보고서 초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난민심사를 위한 난민위원회의 상설화와 위원수 확대, 출입국항 난민심사 불회부 사유 최소화,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결합권 보장과 정착 및 생활 지원과 같은 내용은 모조리 삭제되었습니다. 인종차별과 관계없는 난민 정책의 문제이고, 법무부가 어렵히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인권위가 입을 대는 것은 월권이며, 인도적 체류자나 그 가족들이 한국 정부의 정책에 불만이 있다면 다른 나라로 가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나아가 인권위가 독립보고서에 이런저런 내용들을 언급해서 대한민국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는 안 되며, 유엔 기구를 동원해 대한민국 정부에 이런저런 것들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끌어내는 것도 맞지 않다는 억지스러운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한국은 연간 1~2만 명에 달하는 난민신청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15명이라는 난민위원만을 두고 있습니다. 난민신청 후 심사기간은 평균 20개월이 넘고, 길면 5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난민 심사기간의 장기화는 원칙적으로 취업도, 건강보험 가입도 불허되고 있는 난민신청자들의 생계와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생명권과 건강권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했다가 난민심사에 회부조차 되지 못하는 이들의 비율은 40%가 넘습니다. 일부는 한국을 떠나지만, 일부는 결정에 불복해 송환대기실에 머물기도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난민심사가 불회부되어 한국을 떠난 사람들이 난민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또는 최소한 인도적 체류자가 될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사실 한국 정부는 강제송환금지라는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송환대기실에서 기약 없이 난민심사에 회부될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들 역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국내 인도적 체류자의 35% 이상은 5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6개월에서 1년마다 체류기간을 갱신하며 살아야 하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처해있습니다. 오랜 기간 국내에 살고 있지만 가족을 국내에 불러 함께 살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지 않고, 취업도 제한당하고 있으며, 생활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가족결합권, 노동권, 사회보장권 같은 최소한의 기본권이 부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인권침해와 인종차별 현실이 일부 상임위원들에게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고 있는 듯합니다.

한편, 미등록 이주민, 특히 미등록 아동에게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해 적절한 체류자격을 부여하라는 것은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였습니다. 법무부는 1년도 지난 2021년에서야 권고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그것은 조건부, 한시적 대책일 뿐이었습니다. 올해 3월 31일, 법무부가 애초에 정해놓은 대책의 종료를 코앞에 둔 이 시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연히 권고 이행을 재차 촉구해야 했고, 체류자격 부여제도 미비로 인해 이주아동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와 인종차별 상황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원위에서 일부 상임위원들은 인권위가 과거에 용어 사용 자제를 권고했었던 “불법체류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들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제도 마련을 반대했습니다. 법무부가 “불법체류” 양산 방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 때문에 상시화, 제도화를 수용하기 어려워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결국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운영하되 적극적으로 검토해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완화되고 말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입니다. 인종과 출신 국가를 포함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정부의 눈치를 보고, 특정 세력의 이권만을 보호하려 들고,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상실한 기구일 뿐입니다. 난민과 미등록 이주아동과 같이 정말로 취약한 상황에 놓인 이들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무관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누구의 인권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제발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들이 인권위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인권위의 상임위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똑바로 알고 일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리를 내놓고 다른 일을 찾기를 바랍니다.

## **\*\*[별첨] 성명문/인권위원들에 대한 시민사회 서한**

‘대한민국에 인종차별이 없다’는 국가인권위원

인종차별철폐 의무를 저버린 국가인권위원회의 파행을 규탄한다

오는 2025년 4월 29~30일,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ICERD)의 가입국인 대한민국 사회의 인종차별 문제를 다룰 20-22차 정기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지난 2018년 17-19차 심의에 이어 7년 만에 진행되는 이번 한국 심의를 위해 정부는 이미 2022년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심의 전에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 실태를 유엔에 알리기 위해 독립보고서 제출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할 독립보고서를 심의하는 전원위원회 회의에서는 한국사회 인종차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오히려 이주민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등의 막말이 오가고 있는 개탄스러운 상황이다.

196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총 179개국에 가입하였으며, 한국은 1978년 협약 가입 이후 협약 준수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아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8년 심의 당시 제출한 독립보고서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불법체류자’용어 사용 지양,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법제화 등 정부보고서보다 더욱 적극적인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심의를 앞두고 진행된 3월 4일, 7일 그리고 17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의 독립보고서 논의 과정에는 사무처가 제안한 주요 권고 내용에 대한 지적과 폐기 요청이 이어졌다. 이에 결국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혹은 인종차별금지 법제와 같은 국가 주도의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법제화 노력에 대한 권고안들이 전면 삭제되고, 그 외의 핵심 권고안들 역시 삭제되거나 대폭 축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특히 김용원 상임위원은 ‘대한민국에는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인종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에는 인종차별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가인권위 독립보고서 자체를 부정하는 망언을 이어갔으며, 강정혜 위원은 ‘인종차별금지 법제 등의 법률은 오히려 국민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는 국가인권위가 인권 보호를 위한 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발언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250만 명의 이주민이 거주하며, 이는 총 인구의 5%에 달한다. 2019년 국가인권위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 응답자의 68.4%가 한국 사회에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최근 반종 정서를 부추기는 극우세력의 대중 선동, 특정 국가 출신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차별, 민간 극우단체의 미등록 외국인 사적 감금과 체포 등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는 국가의 방관 혹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며, 과거 유엔 심의에 직접 제출한 입장을 번복하고 정부가 작성한 국가보고서보다 훨씬 후퇴한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려 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24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에 제출하는 독립보고서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권고를 삭제하는 등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거나 후퇴하는 면모를 보여 왔다. 이는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을 무너뜨리고 인간에 대한 존중을 기준으로 한국 사회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앞장선다는 국가인권위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반인권적 폭거에 다름 아니다.

국가인권위가 반인권적 행보를 거듭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를 실추시키고, 기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행위이다. 이에 우리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20-22차** 대한민국 심의 시민사회 사무국은 대한민국 인종차별 실태를 은폐하고,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법제화를 방해하는 국가인권위의 반인권적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가인권위는 즉시 책임을 통감하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종차별 철폐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5. 3. 21.(금)**

인종차별철폐협약 **20-22차** 대한민국 심의 시민사회 사무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단체 두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주인권 셋,  
공익법센터 어필,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와인권연구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